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장수조례중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추가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1호당 300원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호당 300원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신구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1부. 끝.

신구대비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기준 요 액 비고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1. ~ 4. (생략) 5. 기타 제증명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빌급하는 증명				(증명)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제증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주택가격확인서</u>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⑤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빌급하는 증명			

대한민국정부

	기 관 의 장
선	
람	



제15918호 2005. 2. 12. (토)

【부 령】

- 정보통신부령 제168호(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 3
- 건설교통부령 제425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 3

【대 통령 훈령】

- 대통령훈령제142호(국가이미지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49

【고 시】

-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5호(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증 개정) 52
- 환경부고시제2005-25호·제2005-26호(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52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3호(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56
-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3호(일산통제구역<동산로 포함> 지정) 5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2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6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3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67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4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68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5-1호(항만공사시행) 69
-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호·제2005-58호(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등) 69
-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호 69

【공 고】

- 통일부공고제2005-5호(관인등록) 71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6호(비영리인간단체 신규등록) 71
-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호(국민체육진흥법증개정법률<안>입법예고) 71
-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9호(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72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3호(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및) 73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호(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76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5-3호(공시송달) 76

(이면 계속)

회 람								
--------	--	--	--	--	--	--	--	--

발행 행정자치부 (면집 ☎ 3703-4348 보급 ☎ 727-0611) 1201-4A 1995. 10. 12. 출판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 110-760 190-268 신춘총판 48.8e/m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평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사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사
2.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4조제4항(법 제16조제8항 및 법 제17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또는 한국감정원직원증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①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실무수습신청등) ①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영합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제15918호

관

보

2005. 2. 12. (토요일)

(제194호 - 종무 제1차)